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2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서명옥 · 박성훈 · 김정재
이헌승 · 김기웅 · 배준영
조은희 · 조배숙 · 서범수
이종배 · 김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

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
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을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이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 및 조치절차
6.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① ----- ----- ----- ----- ----- ----- ----- ----- ----- ----- ----- ----- ----- ----- ----- ----- <u>. 이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u>
<신설>	

② (생략)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

임사항 및 조치절차

6.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
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제3항-----

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⑤ (생략)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

---.

⑤ -----제3항

-----.

1.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3항

-----제6항--

-----.

1. ~ 5. (현행과 같음)

⑧ -----성희롱 방지
조치의 내용, 제4항-----

-----제6항

<u>항</u> 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